

#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The Situation of Foreign Access System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서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캐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註 >

**현** 대사회는 정보화사회이며 정보의 "독립없음"은 국가의 독립이 없다"라는 목표아래 1970년대 부터 획기적인 정보관리정책을 전개한 프랑스는 현재 정보산업분야에서 경제대국인 미국·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건전하게 취약점이 없이 튼튼하게 발전하려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민은 타당성있는 지식에 근거를 두고 문제해결의 최선책을 의사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민주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문제를 바람직스럽게 해결하려면 학문적인 원리에 근거를 두면서 당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현실적인 배경 등 체계적으로 정리·축적된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체계적으로 정리·축적된 지식·정보가 그동안

정부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또는 정책수행의 정당화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독점생산·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접근하기 힘들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바람직한 문제해결력 의견표시를 유도할 수 없었고 그동안 국민이 억압당하여 민주사회의 시민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정치·교육·군사·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으로 국민들이 현실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정보)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문제의 해결에 참여하여야 참다운 민주주의로 비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론의 적극적인 주장자들의 이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정보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와 같이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보는 자유로운 것으로서 그 스스로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아닌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원래 비공개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는 자유로운 것인데 정부에서 안보·외교·기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20년 내지 30년)으로 비공개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정보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선진주요국가의 입법례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국가비밀로서 지정하여 일정기간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국방·외교관계정보이며 군사관계 과학기술정보 또는 국가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첨단과학기술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보다 국가안보와 공공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이론적인 근거로 세계 주요국가의 공통

된 입법례이다. 둘째로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하여서는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서만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1970년대 이후 고도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보장 즉,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으며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원리에 따라 이와 직결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보호와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련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관련 정보는 소비자의 생활과 생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비밀은 국민의 재산권적자유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당해 기업에 현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타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입안·계획과정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대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는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경

우는 대부분 법령에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공개되었을 경우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사업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 등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 1. 미국의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국민이나 언론기관의 강력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비밀주의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비밀주의의 팽배에 대하여 언론과의 회에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제정을 서둘렀고 이 법률은 1966년에 성립되어 처음으로 국민의 정보개시청구권을 갖는 획기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미국에서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완전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합중국의 헌법구조상 대통령에게

군사·외교 등 안보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상의 원리를 근거로 국가안전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제도가 대통령에게 있고 또한 하부기관의 장 및 공무원에게도 파생적으로 위임되고 있어 비밀지정정보는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특기할 사항은 비밀지정정보라 하여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부분 비밀등급이 격하되거나 또는 해제되고 추후에는 공개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원한 비밀정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라 하겠다.

정보공개문제는 국민의 알권리로서 정부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기관은 비공개 범위를 될 수 있는대로 축소·조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어 항상 양자간에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그 내용·성격 또는 국가의 특수상황에 따라

전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공개를 허락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비공개정보의 지정을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원칙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정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 외국의 입법례이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적용제외규정, 즉 비공개사항을 설정하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국방과 외교정책에 관계되는 국가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정보자유법 제55조(b)항(1)호 참조)

### 공개제도의 법적근거

미국에서 국가비밀의 지정에 관한 법적근거는 코먼로우(Common Law) 및 헌법상의 대통령 특권(Executive Privilege)과 각종의 의회제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밀지정의 제도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 명령에 합중국의 헌법과 모든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근거로... 라는 명령발동의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비밀지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특권에 관하여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리는 3권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보위의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에 관한 범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의회의 제정법에서도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각 단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1. 헌법상 규정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권한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에게 행정권의 포괄적 권한을 부여 하였고(합중국 헌법제2조 1절 1항) ②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권한 및 외교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동2절1·2절) ③ 법령의 충실한 보행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동 제3절) 위와같이 미국대통령의 국가원

수로서의 포괄적 권한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물론 국회나 국민에 대하여서도 그 법적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면 국가기밀을 보유·관리하는 행정부에게 그 범위의 지정·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실제로 정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자신이 재판관이 된다는 모순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3의 중립적기관에 대하여 비밀지정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 2. 의회제정법상 규정

미국을 비롯한 서구 주요국가에서도 정보공개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 의회제정의 각 단행법에서 국가기밀의 지정 및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권을 대통령(행정부)에게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의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을 비롯하여 많은 법률이 일정한 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정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은 국가의 안

전에 관한 국내, 외교, 군사정책의 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권고를 한다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의 입법례는 의회제정의 각 단행법에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비밀지정의 권한을 부여하며, 대통령은 관련부처·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비밀지정제도와 이에 대한 해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 3. 공개제도의 발전과정

### 가. 트루먼 대통령령(1951)

미국의 비밀지정제도는 1951년 트루먼 대통령령 제10,290호를 발표하여 군사적, 한정적인 비밀지정제도를 크게 확대시켰다. 미합중국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공적정보 행정부 각 주부처에 의한 비밀지정·전달 및 처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1급비밀(Top Secret), 2급비밀(Secret), 3급비밀(Confidential), 4급비밀(Restricted)의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비밀지정의 권한을 주로 국방성 등 군사관계기관에게만 부여되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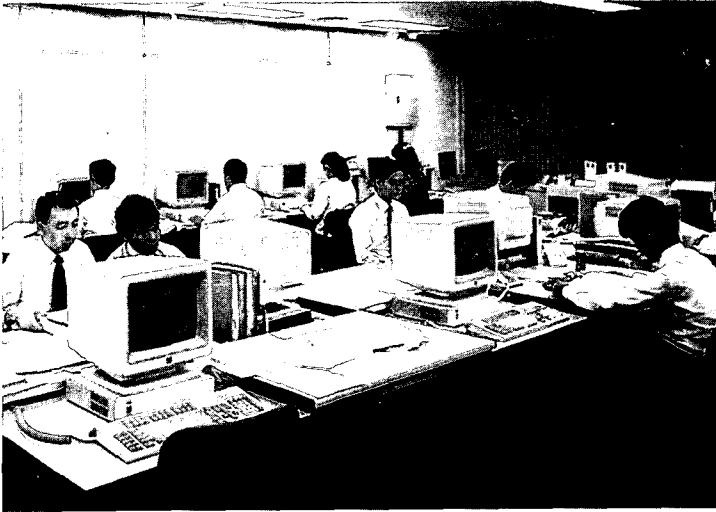
트루먼 대통령령 10,290호에 의하여 일반행정기관에 대하여도 비밀의 지정·심사·해제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정보의 비밀지정이 크게 확대되고 정부의 비밀주의가 대폭 촉진되었다.

### 나. 아이젠하워 대통령령(1953)

트루먼 대통령령 10,290호에 의하여 정부의 비밀주의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대통령령 제10,501호에 의하여 새로운 비밀지정제도를 발표하였다. 비밀지정의 구분을 정리하여 종전의 4급비밀을 폐지하고 1급비밀(Top Secret)과 2급비밀(Secret)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비밀지정의 구분을 명시화하였다. 따라서 비밀지정기관의 권한은 비밀지정기관을 46개 정부기관의 장에게 제한하였는데도 하급기관의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있어 파생적(Derivative) 비밀지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 다. 닉슨 대통령령(1972)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통령령 제11,652호에 의하여 국



가안전보장에 관한 새로운 비밀지정제도를 발표하였다. 비밀구분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1급비밀(Top Secret), 2급비밀(Secret), 3급비밀(Confidential), 4급비밀(Restricted)의 구분방식은 동일하게 하였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비밀지정의 권한을 국가안전사항에 관계되는 절대 최소량의 범위에 한할 것을 요구하고 제1차적 비밀지정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각부처장 및 공무원의 수를 명백하게 제한하였다.

라. 카터 대통령령(1978)

1978년 카터 대통령은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대통령령 1,206호를 발표하고 비밀을

대폭완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족시켰다. 중요한 변경은 비밀지정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① 군사상의 계획, 무기 또는 작전 활동 ② 외국정부의 정보 ③ 첩보활동, 첩보원과 그 방법 ④ 외교관계도는 외교활동 등이다.

#### 4. 결론

미국의 국가기밀 보호제도는 정보자유법이 입법되고 여론등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정보공개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의 변천이 있다 하여도 국가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대통령

에게 광범위한 비밀지정의 권한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즉 대통령에게 폭넓게 비밀지정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미국의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와 아울러 헌법규정상 대통령은 군사·외교에 관한 최고사령관이며 행정권의 포괄적 권한을 부여 받고 있으며 헌법수호와 국가안전보장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대통령의 비밀지정권한을 대폭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이의 현실은 어려운 형편이며 점진적으로 비밀지정기간의 단축 비밀문서의 격하, 해제등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비밀의 급별과 성격을 대통령의 명령이나 법령등에서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비밀지정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도 우리나라 입법연구에 참고할 사항이라고 보겠다.

## 2. 캐나다의 정보공개제도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

가에서 정보공개입법정책에 관하여 크게 논의된바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정보의 청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캐나다에서의 정보공개제도는 196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법률로서 성립된것은 1980년대 초반이며 이 법률의 특징은 정부의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비교적 상세하게 명문화 하였다는 점이다. 그 개요를 간단히 요약하면 ① 캐나다 시민은 누구든지 정부의 행정정보에 대한 개시청구권이 있으며 ② 정부에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개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③ 이에 불복청구권자는 정보코미셔너를 통하여 불복신청을 하고 ④ 연방 법원에 대하여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부의 정보개시업무의 실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의회에 매회계년도마다 이 법률의 적용상황을 년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명문화 하였다. 특히 이 법률은 정부의 정보 관리에 관하여 가장 최신(1982년)의 입법례이며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에 의하여 관

리되고 있는 정부기록에 대하여도 그 개시방법을 상세하게 실정법조문에 명문화 하였다.

### 입법의 경위

캐나다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논의가 활발히 있었던 때는 1960년대부터이다. 의회에서는 1965년 마셔(Mather)의원에 의하여 정보공개법안이 제출되었고 이 법안이 캐나다 최초의 정보공개법안이다. 미국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1966년 이전에 성안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1969년에는 정보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에서 충분히 객관적이며 시의를 얻는 정보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권리로서 정책이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등 15개항의 권고를 제시하였다. 이 권고를 받은 수상은 1969년 2월 하월에 이 권고를 원칙으로 받아들일것을 표명하였고 정부는 1970년에 캐나다 정보청(Information Canada)를 설치하였으며 백서 등을 이용하여 국민과 의회에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1971

년부터 1973년까지 규칙정령법(Statutory Instrument Act)을 제정하였고 의원의 행정문서 제출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준을 정하기 위한 행정문서의 제출요구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였다. 1973년에 내각의 문서가 비밀정보의 누설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부정보의 공표가 의회내외에서 강력히 요구되었으며 1977년 6월 정부는 그동안 검사하여온 정부문서에 대한 국민의 악세스에 관한 입법(Legislation on Public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을 녹색(Green Paper)로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①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개방된 정부가 필요하며 ②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필요하고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절한 범위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④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무원이 솔직한 조언을 행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⑤ 장관이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확실히 하고 ⑥ 국회의원이 선거민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문서에 대한 국민의 접근에 관한 입법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법률의 구성**

이 법률은 77조문과 별표 2개로 구성되었으며 목적과 용어정의(1-3), 정부기록에의 접근 청구(4-12), 접근권이 제외되는 기록(13-27)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정보의 개시가 거절되었을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28-53)와 실제로 정보개시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정보코미셔너청(54-66)의 직원과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별칙(67), 보칙(68-77)에 있어서는 각행정 기관의 장이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별표 I, II 에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기관으로서의 국무성·국방성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캐나다은행등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에 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록의 접근개시청구권**

**1. 접근청구권자**

캐나다국민 또는 영주권자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정부기록에 대하여 접근청구권

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책무**

주무장관은 국민에게 효율적인 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행물을 매년 1회 발간하여야 한다. ① 각 행정기관의 조직·계획·직무에 관한 상세한 기술 ②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의 분류에 관한 상세한 기술 ③ 기타 행정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문서류에 대한 기술 등이다. 이와같이 행정정보를 홍보·소개하는 간행물은 최신의 정보이어야 하며 이들 간행물을 적어도 년 2회이상 통신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개시의 청구**

(1) 문서에 의한 청구

행정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것은 당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이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책무

기록에 대한 개시청구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록이 다른 행정기관과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해당 행정기관에 그 청구를 이송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개시의 가부를 통지하거나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하여야 한다.

**적용제외 정보**

**1. 정부의 관리책임정보**

이 법률에 의하여 정보의 개시청구가 금지되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비밀로 수집된 정보
- (2) 중요한 국가정보
- (3) 군사·국방관련정보
- (4) 범죄관련 정보
- (5) 산업·경제·기술관련 정보
- (6) 개인의 안전정보

**2. 개인정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에 관하여 정보는 개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라하여도 당해 정보에 관한 개인이 개시에 동의 하거나 당해 정보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거나 또는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가 인정된 정보는 개시할 수 있다.

3 제3자의 정보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서 개시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 및 신뢰관계에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의 정보는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개시를 동의하였거나 개시하는것이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 환경보호 기타 제3자의 이익보다도 공공의 이익에 더욱 합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시할 수 있다.

4 정부의 활동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가 정부의 활동으로서 당해기록의 작성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개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권 또는 심사기능의 행사에 의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특별법에 의한 개시금지

의회특정법에 명시된 이 법률 별표II에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는 개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결 론

앞에서 캐나다정보개시법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던 바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적용 제외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목적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캐나다 국민은 정부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시청구권이 인정되며 적용 제외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정보개시에 대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가 인정되는 정보를 개시청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개시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제1차로 정보코미쇼너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고 코미쇼너가 조사·심사하여 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행정기관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연방재판소)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이 법률의 시행 즉, 정보개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코미쇼너청이라는 행정관청을 두고 코미쇼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독이 임명하고 각 성청(各省廳)의 차관상당으로서 독립적인 지위

를 갖고 있고 임기제이다. 넷째, 의회에 의한 적절한 제도이다. 각 행정기관이 정보개시업무들이 법률에 의하여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각 회계년도마다 이 법률은 적용상황을 년차보고서로 제출받고 있다.

끝으로 캐나다의 정보개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매우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최신의 입법으로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각종의 행정정보(컴퓨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전문적 기술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그 개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였다는데 크게 주목을 요하는 입법례이다. DC

